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동호회 운영 및 지원규정

제정 2013. 10.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전국단위의 동호회 등록·운영과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장려하여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협회 회원들이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여성회, 친목회, 기수별 모임, 종교단체별 모임 등 학연·지연·성별·종교 위주의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2. “연합동호회”란 동일한 목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회별로 각각 구성된 동호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연합모임으로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모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전국단위의 동호회(연합동호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적용한다. 다만, 각 시도회에 개별 등록된 동호회는 해당 시도회 동호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승인 등) ① 동호회를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협회장에게 등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등록승인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승인 등을 한다

1. 신규 동호회 승인에 관한 사항
2. 동호회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3. 각 동호회 특별행사 지원 및 대외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4. 각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호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2장 동호회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동호회에는 협회 회원과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동호회 회원은 원칙적으로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동호회 특성상 사회의 저명인사나 전문인으로 동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인사 및 회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동호회 가입 및 탈퇴) ①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호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동호회는 각 동호회 회칙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동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호회에 제출하면 자동 탈퇴된다.

제7조(임원진) 각 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임원진을 구성한다.

제3장 동호회의 운영 및 활동

제8조(등록 기준) ① 동호회에는 8개 이상의 시도회에서 그 소속회원 20인 이상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회원이 최소 16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1개 시도회의 소속 회원의 수가 동호회 전체 회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연합동호회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동호회는 5개 이상의 시도회별로 각각 구성된 동호회가 연합하고, 각 시도회별 최소 동호회원의 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동호회 등록 전 6개월간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④ 제1항, 제2항의 회원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 한곳만 인정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동호회만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동호회 활동

은 제한하지 않는다.

⑤ 학교동문, 향우회, 여성회, 친목회, 기수별 모임, 종교단체별 모임 등 가입에 제한이 있는 모임은 동호회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등록 절차) ①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된 동호회에 한하여 승인한다.

제10조(구비 서류) 동호회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연합동호회의 경우 각 시도회별 동호회 회칙)
3. 동호회 회원등록부(연합 동호회의 경우는 그 각 시도회별 동호회 회원명부)
4. 동호회 조직표(동호회 회장은 협회 회원에 한함)
5. 활동계획서

제11조(등록 취소) 각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협회장이 이사회 심의를 거쳐 동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호회 회원수가 160인 미만인 경우 또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시도회가 8개 미만인 경우(연합동호회는 예외로 한다)
2. 1개 시도회의 소속 회원이 동호회 전체 회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때(연합동호회는 예외로 한다)
3. 연합동호회의 경우 구성원인 시도회별 동호회 자체가 5개 미만으로 축소된 때(최소인원 10인을 충족한 시도회별 동호회가 5개 미만으로 축소된 경우 포함)
3. 동호회 활동이 6개월 이상 지극히 미흡하여 동호회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4. 활동내역이 그 설립 목적에 위반될 때
5. 동호회 구성상 회장 및 임원진 등의 공석이 장기화 되어 기능이 마비된 때
6. 협회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7. 동호회 운영규정을 위반할 때

8. 기타 협회장(이사회)이 등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12조(동호회의 활동범위) ① 동호회의 모든 행사는 전 동호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외행사 참여시는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③ 동호회는 동호회 활성화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협회주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동호회 사업·행사계획 및 실적 등 보고) 각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협회의 예산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매년 동호회비 등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한하다)

2.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행사계획서를 행사 1개월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호회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실적 등 (【별지 3호 서식】 과 활동 참가 사진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증빙서류 첨부)을 보고 하여야 한다.

3. 동호회 임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사항을 즉시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회장은 회원의 변동사항을 매년 9월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비치 서류) 각 동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칙

2. 현금출납대장(회비, 지원금 등 수입·지출 현황)

3. 회비수납대장(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원등록부

5. 행사활동 일지

6. 기타 필요한 관련서류

제4장 동호회 지원금 등 지급

제15조(지원금 등 지급) ① 동호회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에 대해서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행사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협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은 동호회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 등 지급신청) 동호회는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2호 서식】
2. 사업·행사계획서
3. 전년도 회비결산서(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행사 등 지원금 결산서(전년도 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에 한함)
3. 전월까지 회비납부 내역서(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원명부
5. 동호회 활동 실적(중전 행사와 관련한 예산지출 현황 등 증빙서류 첨부)

제17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① 협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행사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행사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협회를 대표하여 외부 사업·행사에 참가할 경우
2. 협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회원 결속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행사일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협회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18조(동호회 지급 한도) 하나의 동호회에 지급하는 지원 금액은 확정된 동호회 지원 총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제19조(동호회 지원 특례)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단합과 협회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동호회에 대하여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에 따라 동호회의 지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후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2013. 10.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동호회에 관한 적용례】

기존 전국단위 동호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동호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제10조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동호회 등록(변경) 신청서

동호회명			대표자	
임원현황	회 장		소 속	
	총 무			
	감 사			
설립목적				
창립회원수				
활동계획				
월 회비				
<p>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동호회 대표자 (인/서명)</p> <p>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귀중</p>				
<p>첨부서류 : 1. 회칙 1부</p> <p style="margin-left: 40px;">2. 각 시도별 회원 명부 1부(연합 동호회의 경우는 각 시도별 동호회 회원명부)</p> <p style="margin-left: 40px;">3. 동호회 조직표 1부</p> <p style="margin-left: 40px;">4. 활동계획서 등 세부내역서 1부</p>				

[별지 제2호서식]

동호회 활동계획 및 지원금 신청서

동호회명		대표자	
참가인원		행사장소	
일 자			

대회(행사) 명 :

대회 목적

기타 사항

소요경비내역(세부내역은 별도자료로 첨부)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인/서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1. 사업·행사계획서 2. 전년도 회비결산서(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행사 등 지원금 결산서(전년도 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에 한함)
4. 전월까지 회비납부 내역서(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제외)
5. 회원명부
6. 동호회 활동 실적(중전 행사와 관련한 예산지출 현황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

동호회명		대표자	
참가인원		행사장소	
일 자			

활동결과(입상여부 및 대회 만족도 등)

기타 사항

참여자 명단(붙임)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인/서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1. 동호회 행사개최 후 동호회활동보고서(사진첨부) 등:
2. 예산·지출 현황 등 증빙서류